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0 선고 2018가단5189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한예정

변론 종결 2019. 7. 9

판결 선고 2019. 7. 30

주 문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 종로구 E 대 132.2㎡ 에 관하여,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오기로 보인다) 1977. 5. 6. 접수 제10868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87. 12. 18. 접수 제57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E 대 13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5. 6. 피고 C 앞으로 1977.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87.12. 12. 피고 D 앞으로 1987.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이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F이 1961. 3.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 G와 차남 H가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G가 2013. 2.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및 I,J, 도이 공동상속하였

다. 그러나 I과 J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298호로,도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4456 호로 각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하여 그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부터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F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피고 C 명의의 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F이 사망한 날로부터 16년이 지나 이루어져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피고 C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D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1부터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54. 6. 12. L로부터 M에게, 1957. 8. 1. M으로부터 F에게, 1967. 12. 28. F로부터 N에게, 1977. 4. 29. N으로부터 피고 C에게, 1987. 12. 18.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에게 차례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3.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